

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이현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·동료 위원님 여러분!

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

이상훈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
□ 서울시는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, 서울형 대안교육기관의 설립 목적과 실행계획에 따라 서울형 대안교육기관의 실질적 공공성 확보와 교육현장과의 지속적 소통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.

□ 본 개정조례안은 「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」 시행에 따라 대안교육 및 대안교육기관 등의 정의를 개정하고,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을 교육감과 협의하여 수립·시행토록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
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
본 개정안을 충분히 검토하시어
아무쪼록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

-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